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안)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10.

파 주 시



□ 사업내역

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규모
파주시 동패동 산79-1 일원 (운정3지구 A21블럭)	24,698㎡	4,009.4453㎡	78,958.9511㎡	공동주택(아파트)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 ~ 지상27층

□ 안전점검비용(정기안전점검 3회, 초기점검 1회): 금 100,334,314원 (VAT포함)

□ 접수기간: 2023. 11. 10.(금) 09:00 ~ 2023. 11. 16.(목). 18:00

※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, 파주시 주택과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.

□ 수행기관 참가 자격 및 지정 방법

- 1) 「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」에 따라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.
- 2)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(예비)순위자 별로 「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 기준 및 배점, 평가방법」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정함.

□ 제출서류

- 1)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.
- 2)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(실적, 평가결과, 가격제안서, 서약서) 1부.
※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,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,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.
- 3)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

-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: ‘붙임1’ 참조
- 주요공정계획: ‘붙임2’ 참조
- 붙임1
 - 파주시 「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」 및 등록명부 1부.
 -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부.
 -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.
- 붙임2: 사업개요서 및 공정계획서 1부(별첨). 끝.